고용노동부

4대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 날

4대 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 날

최저임금 is 기본

2022년 최저임금이
얼마죠?

시급은?

9,160원!

월급은?

1,914,440원!

주 40시간&주휴시간 포함, 월 209시간(고시기준)

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
2천만 원 이하 벌금

4대 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 날

Q1. 질문있어요!!

월급이 1,914,4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건가요?

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!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?

소정근로에 따른 임금
(기본급 등)

+

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% 초과분 ('22년 기준)

*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.

+

복리후생비(식비, 교통비 등)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% 초과분('22년 기준)

*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4대 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 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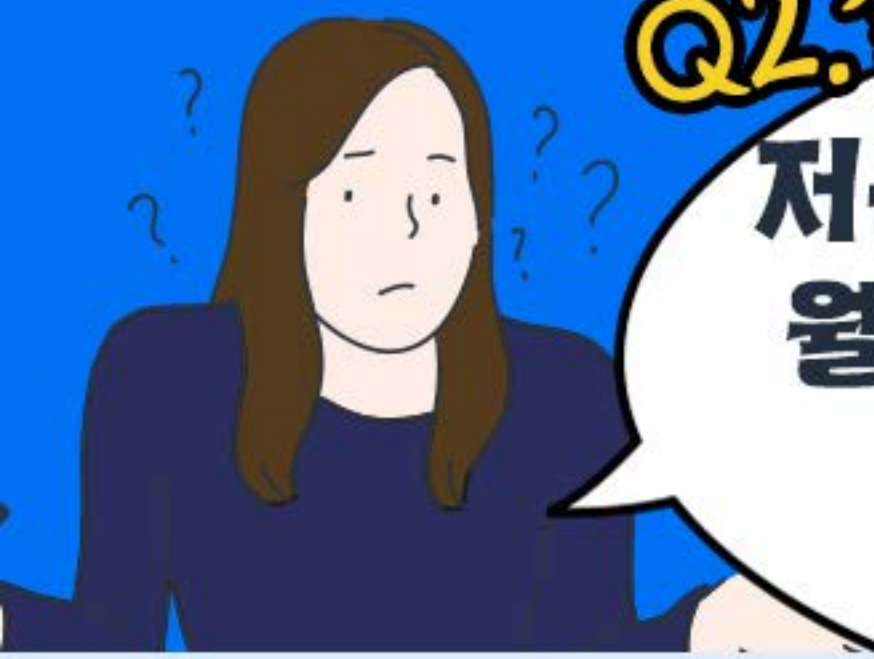

Q2. 질문있어요!!

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. 최저임금을 준수한 금액 맞나요?

기본급	170만 원
식대	10만 원
교통비	10만 원
시간 외 수당	10만 원
합계	200만 원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

기본급	170만 원
*식대·교통비	161,712원
합계	1,861,712원

*식대·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,914,440원의 2%인 38,288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('22년 기준)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**1,861,712원** ÷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**209시간** = **8,907원** < '22년 최저임금 **9,160원**

최저임금 위반!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
최저임금을 **위반**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!

4대 기초노동질서
현장예방점검의 날

꼭 지키자~! 최저임금

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받고 있나 확인해보기

바로가기

https://www.moel.go.kr/miniWageMain.do

고용노동부